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 - 88
----------	---------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업(안 제3조, 제4조)
- 나.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안 제5조)
- 다.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안 제6조)
- 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7조)
- 마. 수탁운영자의 의무(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3)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 명령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보조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타인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6. 근로복지시설 운영 시 발생한 사고 책임
7.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9조(관리·감독)** ① 수탁운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3844호, 2019. 3. 28.)에 따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비 100%)

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19. 7. ~ 2023. 12.(54개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출	시비보조금	163,000	364,000	369,000	374,000	379,000	1,649,000
	구비보조금	-	-	-	-	-	-
	소계(b)	163,000	364,000	369,000	374,000	379,000	1,649,000
□ 총 비용(a-b)		163,000	364,000	369,000	374,000	379,000	1,649,000

※ 2019년 개소당 연평균 예산 지원액 359,000천원

인건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 4. 재원조달 방안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운영 지원

###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조문석(☎ 3153-8553)